

2016.09.28

'전기용품안전 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전부개정안 입법예고' 안내

1. 제안 이유

- 기존 유사한 제도로 운영되고 있던 '전기용품'과 '공산품'의 안전관리제도를 통일적이고 종합적으로 운영하여 전기용품 등의 위해로부터 국민의 생명·신체·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『전기용품안전 관리법』과 『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』을 통합하는 방안을 담은 입법예고 및 의견제출을 실시합니다.

2. 주요 내용

-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의 안전관리를 위한 심의기구로 **제품안전심의위원회에 관한 회의 및 운영**, 안전기준 재·개정 등을 검토하기 위한 **전문위원회 구성, 회의 및 운영** 등 규정
- 안전인증, 안전확인신고,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제품 중 **제품 시험을 목적으로 통관되는 경우 안전 인증, 안전확인신고, 공급자적합성확인을 면제**
- 안전인증을 받은 전기용품 등의 안전성 유지를 확인하기 위한 정기검사를 기존 매년 1회에서 **2년에 1회**로 주기를 늘려 **제조자의 영업활동 부담을 경감**시키고, **정기검사 우수업체에 부여하던 인센티브 조항은 삭제**

2016.09.28

'전기용품안전 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전부개정안 입법예고' 안내

2. 주요 내용

- 안전인증기관 및 안전확인시험기관의 업무정지에 따라 **당해 사업자에게 제품의 안전인증 또는 안전확인신고 업무에 심한 불편**을 주는 경우에는 그 **업무정지 처분에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여**하는 절차를 마련
- 안전인증, 안전확인신고, 공급자적합성확인의 정보를 게시하지 아니한 **인터넷 판매자**에 대한 과태료, 안전인증 등의 표시가 없는 생활용품의 **판매중개, 구매 또는 수입을 대행한 자**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등의 **과태료 부과 세부 규정**을 마련
- **공급자적합성확인 후, 그 확인내용을 신고하도록 법률이 개정됨**에 따라 신고 시 필요한 **수수료 규정**을 마련하고, **어린이보호포장신고 제도**가 수수료 없이 운영되고 있으므로 **수수료** 규정을 마련

2016.09.28

'전기용품안전 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전부개정안 입법예고' 안내

3. 의견 제출

✓ **제출처** :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전기통신제품안전과

✓ **의견서 기재사항** :

- 1)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(찬·반 여부와 그 사유)
- 2) 성명(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), 주소 및 전화번호
- 3) 기타 참고자료

✓ **제출의견 보내실 곳** :

- 일반우편 : (27737) 충북 음성군 맹동면 이수로 93
국가기술표준원 전기통신제품안전과
- 팩 스 : 043)870-5676
- 전자우편 : psd0@korea.kr

✓ **기한** : 2016. 11. 25

전기용품안전 관리법 시행규칙 규제영향분석서

I. KS인증제품의 안전인증 면제 규정 정비

1. 분석대상 규제의 개요

1. 규제사무명 등	등록번호	(강화규제)		
	규제사무명	KS인증제품의 안전인증 면제 규정 정비		
2. 구분	등록변경사유	강화	등록단위	부수적규제
	성격별분류	사회적규제/인증	유형/구분	기준설정
3. 소관부처 및 작성자 인적사항	소관부처	산업통상자원부	제안부처	산업통상자원부
	담당부서	전기통신제품안전과	처리기관	중앙행정기관(소속기관)
	작성자 인적사항	- 산업통상자원부 전기통신제품안전과 안광희		
4. 근거법령명 등	○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13조 및 제22조			
5. 피규제집단 및 이해관계자	○ 생활용품 제조업자 및 수입업자			
6. 규제존속기한	○ 미설정 - 생활용품의 위해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운영되는 제도이므로 존속기한을 설정하지 않음			
7. 신설(강화)규제의 내용	○ KS인증 받은 경우 제품시험과 공장심사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, 안전인증서를 추가로 발급 받도록 함 * 안전인증 신청시 KS인증을 받은 제품에 대해서는 공장심사와 제품시험을 면제하도록 규정하여 이중 시험으로 인한 부담을 감소			
8. 규제체계도	<div style="border: 1px solid black; padding: 5px; margin-bottom: 5px;">○ 안전(KC)인증 신청서 작성(KS 인증 면제내용 작성)</div> <div style="text-align: center;">↓</div> <div style="border: 1px solid black; padding: 5px; margin-bottom: 5px;">○ KS 인증 검토 및 제품시험과 공장검사 면제</div> <div style="text-align: center;">↓</div> <div style="border: 1px solid black; padding: 5px;">○ 안전(KC)인증서 발급</div>			

가. 규제의 필요성

1) 현황 및 문제점

- 제조업자의 부담 완화를 위해 KS인증 받은 전기용품은 안전인증(KC)을 면제하고 있으나, KS인증 마크를 허위로 부착하여 통관 및 판매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으므로 개선이 필요
- KC인증 받은 전기용품은 시장사후 관리(년간 4500여개 제품, 35억원이상 시장 사후관리비용으로 지출)를 엄격하게 실시하고 있으나, KS인증 받은 제품에 대해서는 사후관리의 사각지대에 있으므로 KS제품으로 위장하여 판매하고 있음
- * 정부는 '15년 KC인증 제품 4,864개 조사, 745개를 리콜명령, 인증취소 등의 행정처분을 실시하였으며, 한국제품안전협회는 '15년 4,308업체 조사, 1,140업체를 고발하였음
- 또한, 안전인증 받은 수입 전기용품 세관 통관시에도 세관장이 안전인증 여부를 확인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인증을 받지 않은 제품에 대한 소입이 불가능 하나, KS인증제품에 대해서는 인증여부를 확인하는 규정이 없으므로 확인 없이 통관되고 있음
- * 관세청과 국가기술표준원의 통관단계 수입제품 안전검사 사업수행 결과, '15년에는 수입제품 2,418건을 조사, 1,046건을 적발하는 등 KC인증제품은 사후관리가 강화되어 있음
- KS인증을 가지고 있는 업체가 KC인증을 신청하였을 경우에는 제품 시험과 공장검사를 면제하지 않고 있으므로 KS인증 업체의 인증부담을 감소시키기 위해 제품시험과 공장검사를 면제하는 것이 필요
- * 현재는 KS인증을 보유하고 있는 업체에 대해서 KC인증은 면제하고 있으나, 제품시험과 공장검사를 면제하지 않고 있으므로 KC인증과 KS인증을 모두 보유하고 있는 업체는 제품시험과 공장검사 면제를 요구하고 있음

2) 규제 의 신설 · 강화 필요성

□ 규제 도입 목적

- KS인증 제품이 전기용품 안전관리의 사각지대에 있으므로 KS인증제품에 대해 KC인증을 받도록하여 안전관리의 사각지대 해소가 필요

□ 규제의 타당성

- KC인증은 소비자보호를 위한 강제인증 제도로서 임의인증(KS인증)을 받았다고 하여 강제인증을 면제하는 것은 적합하지 않으므로 안전인증은 받되 제품시험과 공장검사를 면제하여 우수한 업체를 실질적으로 지원하는 것인 타당함

* 전기용품의 시장 사후관리에서 KS인증 받은 제품에 대해서는 사후관리를 하지 않고 있으며, 수입제품 통관시에도 KC인증에 대해서는 세관장이 안전인증여부를 확인하고 있으나, KS인증제품에 대해서는 확인 없이 통관되고 있는 실정임

□ 규제의 적정성

- KS인증을 받은 제품에 대해서는 안전인증서 발급을 위한 수수료 50,000원이 추가되나,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고 안전관리의 사각지대를 위해 필요한 사항임
- 인증서 발급비용 50,000원은 현재 KC인증서 발급비용과 동일하므로 수수료 50,000원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됨

나. 규제대안 검토 및 비용 · 편익 분석과 비교

1) 규제대안의 검토

- 안전관리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대안으로 검토된 사안이며, 타 법령에서도 안전인증 전체를 면제하지는 않으므로 안전관리를 위한 최선의 방법으로 판단됨

2) 비용·편익 분석과 비교

- 안전인증서 발급을 위한 수수료 50,000원이 추가되나,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고 안전관리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것이 훨씬 편익이 큼

다. 규제집행의 실효성

1) 이해관계자 의견 및 반영여부

- 워크숍, 설명회 등을 수차례 실시하였으며, 이해 관계자의 이견 없음

2) 집행자원 및 능력

- 안전인증을 받지 않은 자에 대한 벌칙규정이 있으므로 집행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있음

라. 기대 효과

- 소비자보호 및 안전관리의 사각지대 해소

II. 일회성으로 전기용품을 생산하거나 수입하는 경우 수량을 제한

1. 분석대상 규제의 개요

1. 규제사무명 등	등록번호	(강화규제)		
	규제사무명	일회성으로 전기용품을 생산하거나 수입하는 경우 수량을 제한		
2. 구분	등록변경사유	강화	등록단위	부수적규제
	성격별분류	사회적규제/인증	유형/구분	기준설정
3. 소관부처 및 작성자 인적사항	소관부처	산업통상자원부	제안부처	산업통상자원부
	담당부서	전기통신제품안전과	처리기관	중앙행정기관(소속기관)
	작성자 인적사항	- 산업통상자원부 전기통신제품안전과 안광희		
4. 근거법령명 등	○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35조			
5. 피규제집단 및 이해관계자	○ 전기용품 제조업자 및 수입업자			
6. 규제존속기한	○ 미설정 -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의 위해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운영되는 제도이므로 존속기한을 설정하지 아니함			
7. 신설(강화)규제의 내용	○ 일회성으로 제품을 수입하거나 제조할 경우, 공장검사를 생략하고 안전기준에 따른 제품시험만 실시하여 수입하도록 함에 따라 수량을 100개 이하로 제한 하고자 함			
8. 규제체계도	<div style="border: 1px solid black; padding: 5px; margin-bottom: 5px;">○ 업체(일회성제품 안전검사서 신청서 작성)</div> <div style="text-align: center;">↓</div> <div style="border: 1px solid black; padding: 5px; margin-bottom: 5px;">○ 제품 샘플링 및 시험</div> <div style="text-align: center;">↓</div> <div style="border: 1px solid black; padding: 5px;">○ 일회성 제품 안전검사 확인증명서 발급</div>			

가. 규제의 필요성

1) 현황 및 문제점

- 제조공장이 없는 수입업자가 외국 시장에서 전기용품을 구입하여 국내 시장에 판매하고자 할 경우, 제조공장이 없는 수입업자는 안전인증을 받을 수 없으므로 국내시장에 전기용품을 판매 할 수 없음
- 외국에서 판매되는 제품을 수입하여 국내시장에 판매하고자 하는 수입업자가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요청하여 왔기에 일회성으로 제품을 수입하는 자에 대하여 제도적인 장치를 도입
- * 국내외 형평성을 고려하여 국내의 경우는 일회성으로 전기용품을 제조하는 경우 100개이하에 한하여 안전기준 적합성검사만 받고 시장에 출시 가능

2) 규제의 신설·강화 필요성

□ 규제 도입 목적

- 공장검사 없이 제품시험만 적합하면 판매할 수 있도록 한 제도
이므로 제품의 안전관리를 위해서는 제조된 제품만을 검사하고 제조된 제품에 한하여 안전검사 합격증을 발급하는 것이 필요

□ 규제의 타당성

- 일회성으로 제품을 수입하거나 제조하는 경우에는 소비자의 선호도나 시장의 반응을 위해 시험용으로 제품을 도입하거나, 일부제품의 병행수입을 위해 이용될 것으로 판단하는 바,
- 100개 정도의 제품이면 타당할 것으로 판단하며, 이 정도의 수량에 대해서는 제품의 안전관리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 함
- * 설명회에 참석한 업체 대부분은 소비자 선호도 조사를 위해 동 제도를 이용할 것이라고 응답하였음

□ 규제의 적정성

- 100개 정도의 수량이면, 소비자 선호도 조사를 위해 충분할 것으로 판단되며, 일부 병행 수입업자에 대해서도 1회에 100개 정도의 제품을 수입할 수 있게 하면 적정할 것으로 판단 함

나. 규제대안 검토 및 비용·편익 분석과 비교

1) 규제대안의 검토

- 동 안전관리 업무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는 수량을 100개 이하로 제한하는 것이 타당함

2) 비용·편익 분석과 비교

- 수량 제한에 따른 비용의 변화가 없음

다. 규제집행의 실효성

1) 이해관계자 의견 및 반영여부

- 워크숍, 설명회 등을 수차례 실시하였으며, 이해 관계자의 이견 없음

2) 집행자원 및 능력

- 안전검사를 받지 않은 제품을 제조하거나 수입할 경우에는 벌칙에 따라 처벌할 수 있으므로 법 집행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있음

라. 기대 효과

- 안전관리 제도의 실효성 확보